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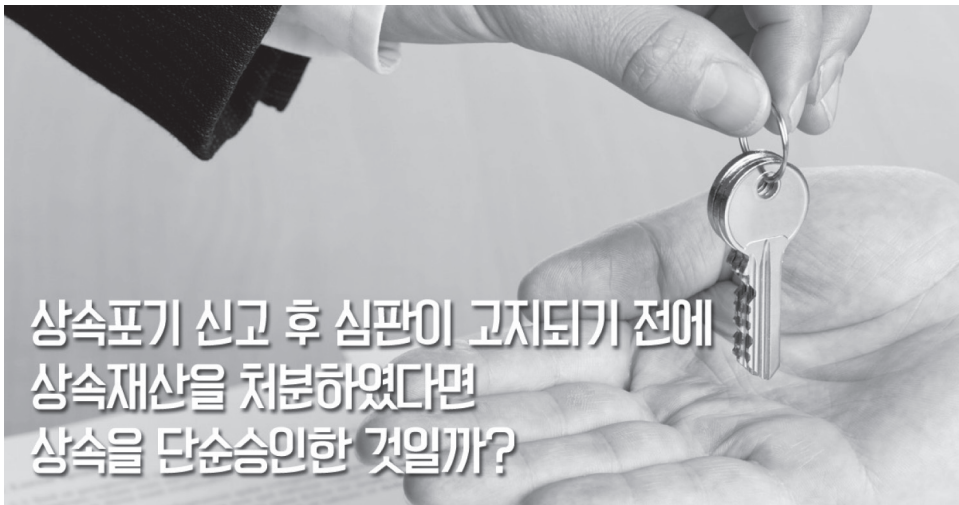
Q. 자동문 설치업자 A는 원룸 주인 B로부터 위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A는 추가로 자동문에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자동작동

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10일 후부터는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자동문은 설치자가 아니면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는 장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후부터는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습니다. A는 자동문을 파괴한 것이 아닌데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고,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의 행위로 위 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이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A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깨뜨리지 않는 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나마 감추거나, 작동을 못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일까?

상속포기 신고 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일까?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 B는 가정법원에 A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 B는 A가 생전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팔았다. 그 이후 법원은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A의 채권자 C는 B가 자동차를 판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속포기는 언제 된 것일까? B가 자동차를 팔기 전일까 판 이후일까?

A.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를 법정취득 또는 당연취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제1005조). 하지만 이러한 원칙도 상속인의 자기결정원칙 내지 사적자치원칙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1019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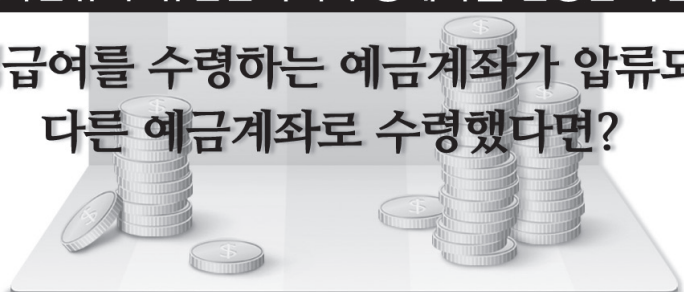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30조, 제1041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이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까.

BANK

거래일 년	거래내용 계좌번호	직입액/지급액	현재잔액	거래점
<p>[계좌압류 후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사건]</p> <p>휴업급여를 수령하는 예금계좌가 압류되자 다른 예금계좌로 수령했다면?</p>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예금계좌가 압류되자 다른 예금계좌로 수령했다면?

Q. 甲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급여를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있었다. 甲의 채권자 乙이 위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보험급여의 일부를 추심하자 甲은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였다.

A.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

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이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장차 수령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전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법원사람들)